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	수정 후
393p 번호 : 89	해설	수정 전	[해설] 보험회사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. 합병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(보험업법 제151조 제2항, 제145조). 즉 합병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공고해야 한다. ① 보험업법 제153조 제3항 ② 보험업법 제151조 제1항 ③ 보험업법 제153조 제2항	
		수정 후	[해설] 가. (×)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(보험업법 제140조 제1항). 나. (○) 보험업법 제141조 제2항 다. (×)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(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). 라. (○) 보험업법 제142조 마. (×)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을 정할 수 있다(보험업법 제143조 제2호).	
		수정사유	해설 오류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